

瑞山市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0. 11. 7
總務委員會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0. 11. 3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2000. 11. 4
- 라. 上程日字 : 2000. 11. 7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地域經濟課長 南圭宗)

가. 改正理由

- 본 조례에 의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지금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수행하여 오던 것을 부시장으로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실무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 종전에는 관련부서에서 상정한 안전을 실무적인 검토와 조정기능 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하여 심의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정할 안전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을 실무적인 사전검토와 조정 기능없이 직접 상정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사회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물가관련 실무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되며,
- 서산시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서장으로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7월 「일하는 방식개선」 지침 내용과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한 내용의 조례라고 여겨짐.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01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 . (제 회)

서산시 소비자보호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11. 3 .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81 호
----------	---------

제출년월일 : 2000. 11. 3.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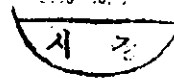
-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여 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지금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수행하여 오던 것을 부시장으로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실무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 나. 종전에는 관련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을 실무적인 검토와 조정기능 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하여 심의해 오던 것을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나. 소요예산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심사필	기획감사담당관
	2000. 10. 24 재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장 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22조제2항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연직위원의 직제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제2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서산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실무위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시 산하 물가관련 실무 실·과장으로 한다.

1. 문화공보담당관
2. 지역경제과장
3. 농림과장
4. 축산해양과장
5. 건축과장
6. 지적과장
7. 보건소 보건과장

③실무위 위원장은 실무위를 대표하고 실무위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지역경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실무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담당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p>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u>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u></p> <p>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신 설></p>	<p>제19조(구성) ①----- <u>위원장 1인</u> -----</p> <p>-----</p> <p>-----</p> <p>②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u></p> <p>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u>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연직위원의 직제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u>-----</p> <p>제25조의1(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서산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실무위 위원장은 사</p>

현행	개정
	<p>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시 산하 물가관련 실무실·과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공보담당관 2. 지역경제과장 3. 농림과장 4. 축산해양과장 5. 건축과장 6. 지적과장 7. 보건소 보건과장 <p>③실무위 위원장은 실무위를 대표하고 실무위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지역경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실무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p>